

「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리장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5개 통·리 증설에 따른 통·리장 5명 증원(안 별표)
 - 당초 : 693개 통·리장(통장 491, 리장 202)
 - 변경 : 698개 통·리장(통장 495, 리장 203)
 - 고아읍 1명, 원평동 2명, 선주원남동 1명, 진미동 1명 증원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불임)
- 합 의 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통리반 증감에 따른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리장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주민생활권 현실에 맞게 통리장 정수를 조정함으로써,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